



중국,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대폭 완화

중국의 경우,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산업분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지난 4월 10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〈부가통신업무 대외개방의 확대를 위한 시범구역업무에 관한 통고〉(이하 ‘통고’)를 공포하여 지정된 시범구역 내에서 부가통신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취소 또는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. 아래에는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.

1. 시범구역 범위

- 베이징시
- 상하이시 자유무역구 린강구 및 푸둥신구
- 하이난성
- 광둥성 심천시

2.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

〈통고〉에 의해 외국인투자 제한이 취소 또는 완화된 각 통신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부가가치 통신업무	제 1 류 부가통신업무: 설비와 자원류를 기초로 하는 업무	인터넷 데이터 센터(IDC)	통고는 처음으로 외국투자자(홍콩, 마카오 제외)를 상대로 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주주의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을 취소함(즉, 외국인 100% 투자 가능).
		콘텐츠 전송 네트워크(CDN)	외국인 100% 투자 가능.
		인터넷 접속 서비스(ISP)	외국인 100% 투자 가능. 단, 이는 기간통신 인터넷 접속 설비를 통한 이용자에 대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에 한하여만 허용됨.
	제 2 류 부가통신업무: 공공응용 플랫폼을 기초로 한 업무	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처리 업무(EDI)	외국인 100% 투자 가능.
		인터넷 콘텐츠 제공 업무(ICP) 중의 정보 발표 플랫폼 및 전송 서비스	외국인 100% 투자 가능. 단,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, 네트워크 출판 서비스, 네트워크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, 인터넷 문화경영이 이에 제외됨.
		인터넷 콘텐츠 제공 업무(ICP) 중의 정보보호 및 처리 서비스 업무	외국인 100% 투자 가능.

3. 시사점

위의 완화조치에 따른 세부적 규정은 각 시범구역 정부에서 별도 제정할 예정이므로 좀더 지켜 볼 필요가 있으나, 기존의 법규정에 따라 지분비율 등이 제한된 상태로 중국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하지 못한 기업들은 이번에 중국 진출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

법무법인 린 중국팀은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및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 상기 내용에 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린의 중국팀(Tel. 02-3477-8695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홈페이지

관련 구성원



나승복 변호사
T. 02-3477-8695
E. sbnah@law-lin.com



이용철 중국변호사
T. 02-3477-8695
E. yzli@law-lin.com



양문아 중국변호사
T. 02-3477-8695
E. wpyang@law-lin.com

법무법인 린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린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이 메일을 수신 거부하려면 lin-newsletter+unsubscribe@law-lin.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[More LIN Newsletters](#)

鹿米 법무법인 린

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 길 27, 지파이브센트럴 프라자 326 호
T.02-3477-8695 F.02-3477-8694